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OECD Update

[KPMG report: Summary and initial analysis of Pillar One Blueprint](#)

Pillar 1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Amount A ②Amount B ③조세 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구성요소 구체화

① Amount A

■ 적용범위

(1) 업종기준

적용 업종 범위를 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 이하 “ADS”) 및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 이하 “CFB”)으로 나누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 ADS는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디지털기반 서비스 (즉, 셋업 후 최소한의 인적 개입 필요)로 규정하지만 포함 업종과 제외 업종을 열거하고 있음

ADS에 포함되는 서비스 범위

ADS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범위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본부

12 October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이사](#)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광고 서비스; • 사용자 데이터의 판매; • 온라인 검색 엔진; • 소셜 미디어 플랫폼; • 온라인 중개 플랫폼;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 온라인 게임; • 표준화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전문 서비스; • 맞춤형 온라인 교육 서비스; • ADS 자체가 아닌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 "사물 인터넷" 연결이 있더라도 실물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 • 인터넷 또는 다른 전자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

<KPMG 의견>

Blueprint에 따른 ADS 정의는 유럽 연합 스타일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 ("DST")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의 자사 제공 및 표준화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포함. 다만, 표준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포함되지만,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외됨. 표준화된 클라우드 서비스(In-scope)와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Out-of-scope)를 구분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침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음

한편, 납세자가 적용대상(In-scope) 요소와 적용비대상(Out-of-scope)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 거래를 분리해야 하지만 이는 Amount A의 복잡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사업활동이 적용범위에 있는지 아니면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더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 CFB는 일반적으로 통상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직접 및 간접판매(대리인·중개인 등 제3자, 프랜차이즈·라이선스 등을 통한 판매)를 포함하나 소비자와 관계가 없는 B2B 업종(중간재·부품 등 판매)은 적용 제외되며, 천연자원, 금융서비스, 인프라건설, 국제항공·해운업도 제외됨
- 향후 금융기술("핀테크") 사업을 제외 업종인 금융서비스에 포함시킬 지에 대한 추가 작업이 진행될 예정

금융서비스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금융서비스 사업이 ADS에 포함되는 활동(사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활동이 제외의 범위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를 분리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2) 규모기준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할 것이며 글로벌 매출액과 국외 적용업종 매출액에 대해 Amount A를 적용할 것임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OECD가 제시한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기준인 연 7.5억 유로(약 1조원)를 기준금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약 2,300개의 다국적기업이 과세될 예정임. 향후 구체적인 기준금액, 단계적 도입방안(기준금액 단계적 하향조정) 등에 대해 논의 예정

■ 과세연계점

- ADS: ADS 사업의 특성상 물리적 존재없이 상당하고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소재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수익에 따라 연관성이 결정되며, 동 수익기준은 논의 중이나 약 5백만 유로 미만으로 설정될 것임
- CFB: CFB 사업은 원격 사업활동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최소매출기준과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최소매출기준은 ADS와 마찬가지로 현재 논의 중이나 시장소재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수익이 약 5백만 유로 미만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기준은 시장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종속기업 또는 PE로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에서 PE의 정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그룹-PE" 정의를 사용예정), 지속적 광고·홍보활동 등 다수 방안을 논의 중임

<KPMG 의견> 기존 조세조약이나 국내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독립적으로 그룹-PE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UN과 OECD 모델 규약을 기반으로 잠재적 수정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매출귀속 기준

- 글로벌매출이 귀속될 시장소재국(원천지국)을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인 복수 지표(예: 지리적 위치, IP 주소, 사용자 전화 번호의 국가 코드)를 순위에 따라 적용. 구체적인 지표와 그 적용 순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예정

<KPMG 의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고객 또는 독립 유통 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은 지정된 지표의 적용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기록을 보유할 필요는 없으나 아래 내용을 문서화하고 보관해야함. 세무 당국은 동 문서화를 검토할 예정이며 동 검토는 매출귀속 기준 적용과 관련된 다국적기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국한됨

- 매출 귀속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의 내부 통제 프레임 워크의 기능

- 각 매출 유형 및 각 관할권에 대한 지표 적용 결과에 대한 통합적이고 주기적인 정보
- 특정 수익 범주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지표
- 상위 지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포함하여 하위 지표가 사용된 상황

<KPMG 의견> 많은 다국적 기업이 해당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 매출귀속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

■ 과세표준 산출

- IFRS 또는 적격 GAAP에 따라 작성된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계산한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함
- Amount A를 계산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되(과세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으로 구분) 향후 구분 면제 및 완화기준이 구체화될 예정. (글로벌 매출기준이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구분 면제 또는 업종간 이익률 차이가 기준 이하인 경우 기업 선택 허용 등)
-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손실공제와 별개로 Amount A 차원에서 손실 이월공제됨

■ 이익배분

- 이익배분 공식은 정상가격원칙과 별개로 산출되며 이월된 손실을 공제한 후 연결실체 또는 업종별 과세표준에 적용함. 아래 3단계를 거쳐 시장소재국 별 배분소득이 결정됨. (아래 회색 음영 표시는 현재 미정으로 향후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값)

① 다국적 기업 A의 매출×(A기업 조정 후 세전이익율-이익율 기준)= A기업 초과이익

② A기업 초과이익×배분율=전체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 (시장기여분)

③ 배분대상 과세소득× 배분지표=개별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

-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차별화와 시장소재국에 따라 차별화 논의 예정이며, 기존 과세 체계와 새로운 Amount A 계산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분되는 Amount A 금액을 조정할 예정임

■ 이중과세 해소

(1) Amount A 납세법인("Paying entity") 식별

- 1단계: Activities test(사업활동 평가): 다국적 기업이 잔여 이익을 창출하도록 중요하고 지속적인 기여를 하는 법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능, 위험, 자산 분석 및 경제적 성격 평가
- 2단계: Profitability test(이익률 평가): 1 단계에서 식별된 법인이 Amount A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익률 평가
- 3단계: Market connection priority test(시장소재국의 과세연계점 평가): 잠재적 납세법인이 Amount A에 대해 제한된 시장소재국에서만 이익을 얻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장소재국의 과세연계점을 평가, 특정 시장소재국에 대한 Amount A 세금은 해당 시장소재국에 충분한 연계점이 있는 납세법인에 배분
- 4단계: Pro rata allocation (비례적 배분): 시장소재국에 충분히 연계점이 있는 법인이 Amount A 세금 전체를 부담할 만큼의 이익이 부족한 경우, 그룹 또는 부문 내의 다른 납세법인이 Amount A 세금의 나머지 부분을 비례하여 부담

(2) 중복과세 제거 방법

- Exemption method(소득공제): Amount A에 따라 납세법인의 시장 관할권에서 창출된 이익의 일부가 과세 대상에서 면제
- Credit method(세액공제): 납세법인의 거주 관할권이 다른 관할권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
- 거주 관할권보다 시장 관할권에서 이익이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거주 관할권은 2 차 과세 권리 보유
- 관할권 별로 혼합된 접근 방식을 통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 중

<KPMG 의견>

- 다국적 기업의 잔여이익이 위험 통제 또는 DEMPE 기능이 없는 관할권에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소득을 납세 관할국에서 시장 관할국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없고, 조세 목적으로 시장 관할국에서 소득을 인식하는 방법임
- Credit method를 채택하는 관할권의 경우 적용 가능한 글로벌 크레딧 메커니즘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② Amount B

국외관계사의 “기본 마케팅 및 판매 활동(Baseline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y)”에 대해 고정이익 보상

■ 기본 마케팅 및 판매 활동

- Routine Distributor / Limited risk distributor 의 기능, 위험, 자산 프로필과 동일
- (i)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기능 (ii) 일상적인 판매 업체의 기능

■ 고정 이익 보상

- 판매법인이 수행하는 기본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대해 고정 수익률을 배분
- Amount B고정 수익률은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설정하며, 산업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현재 합리적인 고정 수익률을 설정하기 위해 공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및 산업별 벤치마킹 스터디 중

■ 납세자의 반박 가능성

- 납세자가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반박할 가능성 존재 (신뢰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
- 반박에 대한 대응 방안은 Inclusive Framework(“IF”) 회원국 사이에서 분쟁의 주제로 남아 있음
- IF회원국 사이에서 기본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의 범위를 넘어 Amount B에의 적용을 확장(판매 에이전트 및 커미션 포함)을 고려 중. 다만 접근 방식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추가 작업과 논의가 필요

<KPMG 의견>

- Blueprint 는 Amount B 고정 수익율이 과도한 시스템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불분명함
- Amount B는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벤치마킹을 수행하면서 모든 지역에 있어 충분한 양의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

③ 조세 확실성

분쟁 방지 및 분쟁 해결 방안을 통해 조세 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

■ Amount A 신고납세제도

- Amount A 는 신고납세제도로 운영
- Amount A 신고납세 담당 법인은 제출 기한까지 Lead tax administration ("LTA")에 그룹을 대신하여 납세신고서 및 자료 제출
- LTA는 자료를 검토 및 검증하고 다국적 기업 구성 법인의 과세당국과 threshold를 충족하는 전년도 시장 수익이 있는 시장 관할 과세당국 (Affected tax administrations, "ATA")에 정보 교환
- 이후, ATA와 LTA는 Amount A 검토 및 조정 제안

■ 조세 확실성을 위한 선택적 요청사항

- Early-certainty 프로세스를 요청하면 ATA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Amount A 관련 세무조사 시행 불가
- 다국적 기업이 조세 확실성 프로세스를 요청하면 LTA는 다국적 기업의 납세신고서에 대한 일차적 검토를 수행하고 패널의 검토 불필요 의견을 낼 수 있음
- LTA 가 패널 리뷰가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하는 경우라도 ATA는 패널 리뷰 요청 가능
- 패널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LTA는 납세신고서에 명시된 입장이 수락되었음을 다국적 기업에 공지함

■ 패널 절차

- 패널 리뷰가 필요한 경우 LTA를 포함한 ATA의 리뷰 패널이 구성됨
- 패널 리뷰의 일반적인 사례는 약 9개월 소요되고, 주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됨
- 패널 리뷰를 통해 세 가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1) ATA 와 다국적 기업의 합의; (2) ATA가 다국적 기업의 신고납세 이외의 근거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국적 기업이 ATA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3) ATA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 ➔ 첫 번째 경우, 다국적 기업은 모든 IF 관할권에서 조세 확실성을 확보함
 - ➔ 두 번째 경우, Early-certainty 프로세스가 완료되며, 다국적 기업은 Amount A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방안에 의존해야 함
 - ➔ 세 번째 경우, ATA 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케이스는 다국적 기업의 Amount A 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결정 패널'(Determination panel)로 이동됨

- 결정 패널이 필요한 경우, 리뷰 패널은 ATA 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준비. 결정 패널은 제시 받은 대안 중에서 선택하여 최상의 방법을 결정. 이 최종 결정은 모든 IF회원국에 구속력을 갖음

■ 분쟁 예방 및 해결

-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기 위해 과세당국을 위한 패널 리뷰 절차가 마련됨 (i) 과세표준, 특히 사업 부문이 세분화된 경우; (ii) 적용 결과 (iii) 납세법인 및 이중과세 해소를 포함한 새로운 과세권의 기타 모든 기능
- Amount A 분쟁 방지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는 Amount A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강제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mandatory binding dispute resolution) 방법이 개발되는 것에 IF 회원국이 동의하였음.
- Amount A와 이외 사항에 관련된 분쟁을 위한 '강제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의 범위에 대한 합의는 아직 계류 중
- Amount B의 적용과 관련된 분쟁(예: 수행 활동이 기본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은 '강제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의 대상이나, 분쟁에 적용되는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KPMG 의견>

- 기존 조세 협약 및 정보 교환 협약을 수정 및 보완하여 Pillar One이 구상한 정보 교환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LTA의 선택적 리뷰는 저-위험 납세자를 선별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가 부담스러운 리뷰 프로세스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조세 확실성 프로세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과세당국이 리뷰 패널을 요청하면 해당 리뷰를 수행하는 행정부의 능력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Amount A 이행 초기에 특히 중요할 수 있음
- 패널의 권고 사항에 몇 군데의 ATA 가 동의하는지에 관계없이 단 하나의 ATA로 인해 리뷰 패널 프로세스가 실패하고 결정 패널이 필요할 수 있음
- Blueprint에는 Amount A와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한 '강제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금까지 OECD와 IF의 관심은 위에서 논의한 Pillar One 구성 요소의 설계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합의는 새로운 Framework 가 실행되기 위해 세법과 조세조약 내에서 Pillar One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 개별 IF회원국의 공동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 Blueprint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다자간 협약의 도입이 도움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광범위한 Pillar One 구현을 위한 Framework 는 아직 검토 및 개발 중.

2. 국제조세/관세 Update

조심2016서3939 (2020.09.22)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AAA 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내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점의 대표자인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국내업체와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가 모두 국내에서 수행된 점, ○○○로부터 선박유를 공급받아 이를 ○○○에 다시 공급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항에서 ○○○선박에 이를 직접 주유한 점, ○○○의 한국지점 대표자인 ○○○쟁점선박유 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한국지점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업무를 ○○○싱가포르본점이 담당할 특별한 이유나 필요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선박유를 실제로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장은 ○○○한국지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싱가포르본점 사업장에서 매입하여 공급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서면법인-354, 2020.03.20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자동차부품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 발생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해당 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원 적발 (매일일보, 2020-10-14)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54182>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181건이며, 적발금액은 14조9429억원에 이릅니다
- 더욱이 외화 밀반출시도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 외환반출입 관련 관세당국의 감시가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거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Made In Vietnam", 내수제품에는 못쓴다...공상부, 원산지 표시 새규정 마련 (인사이드비나, 2020-10-13)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83>

- 기존의 원산지표시 규정은 수출입 상품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경제협약의 관세혜택을 누리는데 적용하였는바, 수입산 원자재로 국내에서 단순 재가공한 제품에 국산품이라고 표기하는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 13일 베트남 공상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베트남 상품 및 제품 상표 표기'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함
- '메이드 인 베트남' 대신 4가지 문구 마련...생산공정 및 원산지에 따라 표기토록 규정 신설
- Produced In Vietnam, Manufacturing In Vietnam, Country Of Origin:Vietnam, Produced by Vietnam

3.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체코: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발표

체코 행정대법원은 소득세법 개정 전 체코 정부로부터 투자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들이 약정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지원된 투자 인센티브의 완전한 취소보다는 조세감면이나 일부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舊소득세법(2015년 4월 30일까지 적용)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이 조세감면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큼 증가시킬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체코 정부로 하여금 제공된 인센티브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2015년 5월 1일부터 발효) 다소 완화되었으며, 정상범위 이상의 특수관계거래로 인해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증가되더라도 인센티브를 취소하는 대신 세율 (법인 소득세율의 경우 19%)에 특수관계거래로 인한 과세표준 변동분(예: 증가분)을 곱한 금액만큼을 세금감면액에서 차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세법은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제공된 (합법적인) 투자 인센티브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세법 효력발생일 이전에 조세감면 기준을 위반한 투자 인센티브분에 대해서도 동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에는 투자 인센티브 관련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체코 행정대법원이 금번 판결을 통해 개정세법 발효 전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또는 못했거나) 위반한 납세자 모두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규정의 적용(인센티브 취소 → 인센티브 혜택 축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국가별보고서 교환에 대한 다자간 협정 시행 발표

2020년 10월 1일 터키 정부는 관보를 통해 국가별보고서 교환에 대한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 이하 "CbC MCAA")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터키의 CbC MCAA 시행으로 타 가입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가능해졌으며, CbC MCAA에 대한 필수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다국적기업 그룹의 터키 자회사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까지 필수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터키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추후 터키 과세당국의 공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터키 세법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그룹의 터키 자회사는 2020년 10월 30일까지 국가별보고서 사전 신고서(국내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에 해당)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먼저 관할 세무서에서 사용자 코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폴란드: 이전가격 관련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29일 폴란드 의회 하원에 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안 초안에는 2020년 9월 KPMG Poland에서 발표한 법인세 및 소득세법 관련 세제 긴축정책 요약 내용 중 이전가격 세제 관련하여 조세피난처 소재 수익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정상가격원칙, 이와 관련된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범위 확대, 폴란드 비거주자 소득원에 대한 규칙 및 다자 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MLI)과 같은 기준안 개정을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 세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이전가격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 피난처(즉, 유해조세제도를 적용하는 국가 또는 영토)에 소재할 경우 정상가격원칙 확대 적용
- 해당 과세연도의 독립적 비특수관계자거래 금액이 PLN 10만(약 3천만 원) 초과 시 조세피난처 관할 구역 사업장 혹은 실질적 관리장소의 납세자 및 비법인격자에게도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 본 개정안은 조세피난처 국가 혹은 관할 구역 사업장 혹은 실질적 관리장소의 납세자 및 비법인격자가 수행하는 특수관계자거래 및/또는 비특수관계자거래에도 적용. 조세피난처와 거래를 수행할 경우에는 개별기업보고서에 거래를 위한 경제적 합리성과 이에 대한 경제적 및 조세 혜택에 대한 설명 포함 필요*

또한, 개정안 초안에는 다양한 이전가격 관리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영향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비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후 사업연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하였을 경우 국내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 면제
- 코로나 19 국가비상사태 발효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이 수행한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
- 코로나 19 국가비상사태 발효 기간 동안 개별기업보고서 및 관련 증빙의 보관 및 관리로 납세자의 기존 compliance 의무 대체

브라질: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이전가격 고려사항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브라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들은 브라질 이전가격세제에 대하여 심도 있고 광범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이전가격과 관련된 분쟁 이슈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대처함으로써, 이전가격정책 준수 및 향후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브라질 헤알화(BRL) 평가절하 관리 방안

대부분의 판매법인들은 사전에 분석한 이전가격 수익률을 기준으로 환율변동 효과를 미포함한 재판매가격방법(preço de revenda menos lucro, "PRL")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입증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품의 현지 재판매/유통 과정에서 환율효과 미반영으로 인한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가격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 분석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방법(preços independente comparado, "PIC") 및 원가가산방법(custo de produção mais lucro, "CPL")은 PRL 분석방법에서 발생하는 환율효과를 제거합니다. 브라질 이전가격 규정에는 OECD 규정과 달리 최적방법원칙(Best Method Rule)이 없어 납세자들이 자율적으로 최적의 이전가격 분석방법을 선택 및 적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헤알화 평가절하로 인해 외화 거래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순매출의 5% 미만 거래는 이전가격 분석 면제기준(safe harbor)의 혜택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이전가격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전가격 분석을 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수행하였다더라도 납세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업연도

종료 전 2020년 하반기에 데이터의 가용성과 그룹 내 계열사들 간 논의가 가능하도록 예비적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계열사 간 조세 효율화를 위한 자금거래 검토

코로나 19 환경에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OECD 모델과 브라질 세법에 기반한 이전가격 규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브라질 이전가격 규정 상 자금거래 계약 특성에 따라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금리가 LIBOR 금리부터 해외시장에서 발행되는 국채금리까지 매우 다양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기존에 체결한 계열사간 자금거래 계약을 재검토하여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그룹의 재정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